



지방재정분야 주요 질의·회신

유윤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본 질의회신 사례는 2011년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회신사항을 정리한 것임

1. 보상업무 수수료 예산편성 관련 질의

Q 질의내용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업무 대행 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를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는지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위 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위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는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 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세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보상사무를 위탁받는 경우에 받는 수수료의 성격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법률에서 해당 수수료를 자치단체가 세입세출 외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세입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정책과-31 (2011.01.04)】

2.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관련 질의회신

Q 질의내용

- 지방문화원진흥법 상 지방문화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 및 인건비 지원가능 여부
- 지방문화원에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을 각각 지원하는 것이 중복지원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184호, 2010.11. 5) [별표 3]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또는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운영비이며, 각 자치단체가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면, 지방문화원에 대하여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보조금 지급 여부는 당해 자치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경비 지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또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 함은 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8]에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로 정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등의 경비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배제되므로, 동일단체인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내용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정책과-32 (2011.01.04)】

3. 성립전 예산 사용 가능여부 관련 질의회신

Q 질의내용 3

-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2010.11.23)과 관련하여 신속한 복구와 연평도 주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서해 5도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주민대피시설 현대화사업 경비(지방비 20% 부담)를 2011년 1월 중 보조금으로 교부 받게 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한 성립전 예산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신내용 3

-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의하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경비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도록 교부된 경비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정책과-109 (2011.01.10)】

4.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제안에 대한 회신

Q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을 중앙정부(행정안전부)에서 심의, 관리.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의해 편성·집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개별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집행을 직접적으로 제한, 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 단체장의 비효율적 예산운용에 대한 통제는 지방의회의 심의능력 강화나 건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자치단체의 자율통제능력 강화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자치단체의 낭비성, 비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성과금 제도, 재정공시제도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효율적 예산운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정책과-249 (2011.01.18)】

5.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에 대한 질의회신

Q 질의내용

- 환경미화원으로부터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 및 2005년 6월~2008년 12월(3년 7개월분)까지의 미



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2010년 6월)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도 동 권고 내용을 적용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문의하신 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각 자치단체별로 단체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환경미화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 (구)행정자치부는 198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매년 환경미화원 노조(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와 협의하여 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시에 적용하는 인부임 기준을 작성하여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환경미화원이 임금수준을 직접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 소송의 당사자로서 화해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미 지급분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 환경미화원 외에 다른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도 임의로 동일하게 임금을 재조정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정정책과-665 (2011.02.14)】

6.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관한 질의회신

Q 질의내용

-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건립 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설물을 건설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비가 시공사 등에 미지급되어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음
- 위 건물을 양도받기 위해 법원의 중재결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소유권의 취득 및 미지급된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동 지급 경비는 어떠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하는지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184호) [별표 8]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예산의 내용과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분류한 것으로서,
 -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소요경비를 어떠한 과목으로 편성할 것인가는 해당 경비와 관련된 구체 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의 운영방법 등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자치단체 경비 지출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소유권의 취득이 법원의 중재결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출경비의 성격은 중재결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대가는 자산취득비의 성격이고, 건물을 건축하거나 설비를 갖추는 데 소요되는 경비라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해당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중재결정의 취지 및 중재결정을 통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의 성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3808 (2010.08.03)】

7. 광역철도 건설비 예산편성 관련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회신

Q 질의내용

-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6]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수송 및 교통분야(120) - 도시철도 부문(123)에는 도시철도 확충 및 운영·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자치단체가 도시철도가 아닌 일반철도, 광역철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일부 자치단체가 수인선, 신분당선 등 광역철도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거나, 시설비로 광역철도역사 승강판의시설 설치경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제8호에서 철도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6]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는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의한 자치사무를 기준으로 하여 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한 것이며, 국가 사무나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 처리를 위한 경비 지출의 가능 여부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철도건설법」상 '일반철도'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철도'의 확충이나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 따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제7항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광역교통시설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비용 부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승강편의시설 설치비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위 광역철도시설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광역철도시설사업의 범위는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정책과-710(2011.02.16)】

8. 세출예산 과목편성에 대한 질의회신

Q 질의내용

- 공원내 매점을 공원관리청인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할 때, 세출예산을 어느 그룹, 편성목, 통계목에 편성해야 하는

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184호)」 (별표8)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하여 세출예산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분류한 것으로서
 -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소요경비를 어떠한 과목으로 편성할 것인가는 해당 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의 운영방법 등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귀 시가 직영하고자 하는 매점의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세출예산 과목편성은 귀 시가 물품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인 바, 정수물품 또는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비정수 물품비는 자산 및물품취득비(405-01)로, 기타 소모성 물품 및 다과류 등의 상품은 사무관리비(201-01) 또는 재료비(206) 등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정책과-971(2011.03.07)】

9.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Q 질의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제2조에서 ‘주민’을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 정한 ‘주민’ 보다 그 범위를 넓게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지방재정법 제3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는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운영방법 등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에서 시달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모델안 제2조는 의견수렴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39조 등 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법령이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에 한정하여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례 모델안 제2조와 같이 의견수렴대상자를 자치단체의 주민 이외의 자로 확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999(2011.03.08)】

10. 지방문화원의 기금 설치 관련 질의 회신

Q 질의내용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장)이 설치·운용하는 자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1000(2011.03.08)】

11. ○○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관련 질의회신

Q 질의내용 1

- ○○시 새마을지회에서 금강살리기 축구 결의대회 등 집회에 사용되는 차량임차 및 애프터임대 명목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1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정한 자치단체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바,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동항 제1호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범위를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 새마을지회에서 「금강살리기사업 축구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공주시가 지원한 보조금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①동 사무가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 ②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동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지의 여부 ③공주시 새마을지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동 사업이 포함되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Q 질의내용 2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지 않고, 위원 15명중 4명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 서면심의를 받았을 경우 정당하게 의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2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해당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정정책과-1042(2011.03.09)】

12. 이월사업 의회승인 절차에 대한 질의회신

Q 질의내용 1

-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이월은 임시회 등에서 별도의 안건으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예산 심의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산안에 포함하여 일괄 의회승인을 받아도 되는지?

A 회신내용 1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고 하고, 동법 제50조 제1항에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동법시행령」 제45조에 명시이월 설명서와 계속비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

류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제7조에 의한〈별표 9〉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계속비사업조서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이월사업 설명서와 계속비사업 설명서는 예산안 첨부서류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은 매 회계연도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안에 포함하여 일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Q 질의내용 2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서 “미리” 는 예산심의 이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음 회계연도 이전을 의미하는지?

A 회신내용 2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서 ‘미리’ 의 의미는 ‘다음 회계연도 이전’ 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정책과-1479(2011.03.31)】

13.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관련 민원회신

Q 질의내용 1

- 1,000억원(군비 7억, 민간 793억, 국비 200억) 규모의 신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투융자심사 대상 여부 및 심사대상일 경우 총사업비 산정범위



A 회신내용 1

-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서 투융자심사 대상을 「자치단체 일반투자사업 및 행사성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산업단지조성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총사업비는 군비, 민자 및 국비를 모두 합한 금액(1,000억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질의내용 2

- 1,000억원(군비 17억, 민간 783억, 국비 200억) 규모의 신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투융자심사 대상 여부 및 심사대상일 경우 총사업비 범위, 투융자심사 시기

A 회신내용 2

- 투융자심사 대상여부 및 총사업비 범위는 [질의1]과 동일합니다.
- 투융자심사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서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 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과-1543(2011.04.03)】

14. ○ ○ 도 운수종사자 자연수원건립기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Q 질의내용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관련, 연수원건립을 포기하는 경우, 기금 채원 중 민간출연금에 대하여 반환이 가능한지

A 회신내용

- ‘○○도운수중사자연수원건립기금’은 별도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법정기금은 아니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그 설치 필요성 등을 인정하여 설치한 자체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은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금 조성액 중 민간단체 출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역시 기금 설치·운영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출연금의 반환은 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기금의 설치목적, 운용방식, 재원확보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출연금 반환여부, 반환 방법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귀 기관의 질의내용 및 기금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 등을 볼 때, 동 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연수원 건립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조례(기금)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질의내용과 같이 연수원 건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동 조례(기금)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기금)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조례에 민간출연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연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정책과-1563(2011.04.04)】

15.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회신

Q 질의내용

- 「○○시보조금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 제6조, 제7조 법령위배 여부

Q 질의내용 1

- (개정조례안 제6조 5호 및 6호)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예상수익금 규모,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수익금을 반납하여 세입증대



에 기여할 수 있는 지를 조사 검토하여 교부 결정하는 내용 신설

A 회신내용 1

-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교부요건에의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익산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는 동법 제17조의 교부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체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규정으로, 동조항은 동법 제17조에 규정된 교부요건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그러나, ○○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6조의 제5호와 제6호는 보조금 교부로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금의 규모와 그 수익금의 반납여부를 교부결정의 판단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수익금의 반납여부 등이 교부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법령상 위임없이 동법 제17조가 규정하는 교부요건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측면이 있어 동조항에 위배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동 개정안으로 인해 수익금을 반납할 수 있는 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보조사업자간 형평성이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질의내용 2

- 질의 2(개정조례안 제7조 제3항)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 완료 후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의 10%를 5년간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학교 무상급식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A 회신내용 2

-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어떠한 교부조건을 붙일 것인지 여부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령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련 조례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단체장은 그러한 취지에 맞도록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

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도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붙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보조금의 반환은 보조사업자가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환조건을 붙이기 위해서는 당해 보조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보조사업자가 얻는 수익의 성질, 타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수익금의 반환이 당해 보조사업의 목적 범위내인지, 반환금액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보조사업별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교부된 보조금의 금액 범위내에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익산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7조 제3항은 상기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모든 보조사업의 수익금 일부를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보조금 반환의 합목적성, 반환금액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 반환조건을 붙일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법령상 근거없이 보조사업자가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보조사업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반납토록 하는 것은 당초 교부된 보조금액 이상을 반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보조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정책과-1591(2011.04.05)】

16. 지방연구원 파견근무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여부 질의회신

Q 질의내용

- ○○○도 정책포커스 공동연구 등을 위한 도정연구관 직책으로 ○○발전연구원(○○○○도 출연기관)에 파견중인 경상남도 소속 2~4급 직원에 대해 ○○발전연구원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회신내용 1

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가능 여부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204-01)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내의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비이며,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조제2호에 의한 <별표2>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 기관장 및 보조기관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그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기관 또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전연구원에 파견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직위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후,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A 회신내용 2

2.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지급 주체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하되,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과의 협의로 원소속기관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파견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상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지급대상 직위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경남발전연구원 또는 ○○○도(○발전연구원과의 협의 완료 조건)가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 민간자율구조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Q 질의내용

- 해상에서의 수난구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 중인 민간자율구조대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근거 및 범위

A 회신내용

○ 해상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제반사무는 국가사무임

- 「수난구호법」에서는 ‘해상 수난구호는 해양경찰서장이 행한다’ 고 하여 사무관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6조),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설치(제8조)하여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조본부장이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음(제9조)
- 따라서, 해상 수난구호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모두 해양경찰 조직에 있으므로 동 업무는 명확히 국가사무라고 할 것임,

*조난된 사람·선박 및 항공기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구조된 사람·선박 및 물건의 보호·관리와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수난구호법 제2조제1호)

○ 민간자율구조대는 실질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

- 민간자율구조대는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업무를 보조·지원함으로써 해양경찰의 제한된 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보완국가
- 「수난구호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민간해양구조대를 소집·동원하고 지휘·감독(제44조)하는 등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가사무를 보조·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함

- 민간자율구조대는 지역 어민, 레저사업자, 잠수사 등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로서, 자발성·무대가성이라는 기본원칙을 감안할 때 경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 만약, 민간자율구조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자율구조대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122)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32)*에 따라 국가는 당해 경비에 대한 부담을 자치단체에 전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 자치단체가 민간자율구조대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122)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32)에 위배되므로 자치단체 지원은 불가



- 참고로, **의용소방대는 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단체 사무***를 보조·지원하고 있으므로, **사무 주체인 자치단체가 일정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임

– 따라서, 경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것과 같이 **국가가 민간 자율구조대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함**

*화재진압 및 예방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이나, 최근 재난재해 대응·인명구조 등 범국가적 업무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소방재정 소요가 증가하여 국고보조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재정정책과-1838(2011.04.15)】

|| 참 고 || 관련법령

〈수난구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5조(수난구조업무의 관할) 해양(해양에서 하천으로 선박의 항행이 가능한 수역을 포함한다)에서의 수난구조는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이 행하고, 하천에서의 수난구조는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행한다.

제43조(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구조업무를 보조·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민간해양구조대를 둘 수 있다.

② 민간해양구조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민간해양구조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근무 등) ① 민간해양구조대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은 해양경찰 구조업무를 보조·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해양구조대의 대원·선박 및 잠수장비 등을 소집·동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집된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구조업무를 보조·지원한다.

제45조(민간해양구조대원 임무수행 시 지위) 민간해양구조대원은 구조본부의 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구조업무를 보조·지원하는 동안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제46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대여 및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무 및 구조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의 치료 및 보상금의 기준·절차 등은 제4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조본부의 장은 구조업무를 보조·지원을 위하여 동원한 민간해양구조대의 소속 선박 등 및 잠수장비가 임무수행 중 손실 또는 손상된 때에는 교체 또는 수리할 책임이 있다.

제47조(한국해양구조연합회의 설립) ① 민간해양구조대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수색구조 봉사활동의 참여증진과 민간해양구조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합회의 조직·운영·기능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 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제6조(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를 둔다.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隊員)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제38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제39조(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9조의2(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2. 회답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고등학교 또는 사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출연하는 등의 설립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8.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산과목 질의 회신

Q 질의내용

- 「노인복지법」 상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할 것인지 또는 ‘사회복지보조’로 편성함이 타당한지 여부?

A 회신내용

- 우리부에서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안부훈령)」 개정시 ‘민간이전경비(307)’ 예산과목의 보조금중 주민복지를 위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의무적 경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보조금(307-10)’ 예산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 상기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보조금’의 범위를 살펴보면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사업
 2.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3.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입니다.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노인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과목은 개정된 ‘사회복지보조(307-10)’ 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1997(2011.04.22)】



19. 기금설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Q 질의내용

- 기초자치단체인 일선 구에서 ○○광역시에서 운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유사한 성격(용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추진 절차 및 유의사항

A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82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금의 용도는 법에 의한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법 제82조제3항에서 정비기금의 용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법 제12조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등은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자치구의 경우도, 정비계획의 수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자치구의 사무로 분류된 사업의 추진과 기타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정한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설치의 필요성(해당 사업이 일반회계로는 추진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목적의 특별회계나 기금이 이미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 재원확보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관련 유의사항 및 추진절차 등은 붙임 '11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부.

【재정정책과-2025(2011.04.26)】

20. 과학교육원 유치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지원 질의회신

Q 질의내용 1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과학교육진흥법)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부·보조·출연, 그 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의 토지매입비 또는 건축비 일부를 대응 투자하여 보조할 수 있는지?

Q 질의내용 2

- 「과학교육진흥법」 제7조제1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학교육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의 토지매입비 또는 건축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잘못된 판단인지의 여부

A 회신내용 1~2

- 현행 「과학교육진흥법」 제7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학교육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육·과학에 관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으며, ○ 보조금 등을 교부하면서 어떠한 교부조건을 붙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령은 별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을 지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과학교육기관(과학교육원)의 지역유치를 위하여 부지매입비나 건축비를 일반재정에서 지출하는 등 교육사무에 대해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개정된 (2011.9.9시행)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재정지출 요건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도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일정기간 경과 시 반드시 교부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이 해당 보조금 교부 목적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보조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수익의 발생 등 보조사업자가 받는 이익, 타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관련 법률들의 취지를 종합 고려해 볼 때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사무인 교육사업에 재정지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 질의내용 3

- 「과학교육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광역지자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초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의미하는지와 기초지자체에서 국가 또는 도 단위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건축비 일부 대응투자 등)이 가능 한지?

A 회신내용 3

○ 「과학교육진흥법」과 관련된 유권해석은 동법의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기초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도 단위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건축비 등)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각각의 관련법령에 의해 검토될 사안이나, 이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경우 재정적인 지원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정책과-2104(2011.04.28)】

21. 민간경상보조금 운영관련 질의회신

Q 질의내용

- FIKA(한국건축단체연합)에 지급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 직원 및 기관 공무원과 2017 국제

건축가연맹(UIA) 총회 유치위원회 소속 시의원 등에 대하여 해외 유치활동을 위한 국외여비 지급 가능 여부

A 회신내용

- 민간경상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 따라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으며, 시 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시 의회의원 신분으로 유치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므로 동 보조금으로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정책과-2205(2011.05.04)】

22.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관련 민원 질의회신

Q 질의내용 1

-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 기본요건

A 회신내용 1

-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 기본요건은 심사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지방재정법령 및 투융자심사 규칙에 따르면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및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투융자사업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질의내용 2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위원회 구성방법

A 회신내용 2

- 지방재정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하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 중 공무원 수를 시도는 1/3이하, 시군구는 1/2이하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질의내용 3

- 사업심사시 어떤 자료와 문서를 갖고 심사할 것인지

A 회신내용 3

- 사업심사시 어떤 자료와 문서를 갖고 심사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한 내역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투융자심사의 경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뢰서를 기초로 하되, 사업위치도, 현장 사진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질의내용 4

- 심사결과의 최종 확정권자를 문의

A 회신내용 4

- 투융자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사업은 자치단체장이 시·도의회심사는 시장 또는 도지사, 그리고 중앙투융자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최종 결정, 통보하게 됩니다.

【재정정책과-2245(2011.05.06)】

23. 경북 ○○군 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질의회신

Q 질의내용 1

- “○○고추나라영농조합법인” 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1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 또는 출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개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국가등의 책무)와 같이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책무를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Q 질의내용 2

- “○○고추나라영농조합법인” 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여부

A 회신내용 12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군의 ‘○○고추나라영농조합법인’이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동 법인의 설립과 목적을 규정한 설립조례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Q 질의내용 2

- "○○고추나라영농조합법인"에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하여 ○○ 빛깔찬일자리지원센터 구축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신내용 12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는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자치단체가 ‘○○고추나라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 조합법인의 사무가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의 여부 및 귀 자치단체의 조례에 설립 및 지원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재정정책과-2298(2011.05.11)】